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512호(號) 1932(昭和 7)년 1월 25일 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30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38호(號)(조선총독부철도[朝鮮總督府鐵道], 사설철도[私設鐵道], 궤도[軌道] 및 항로[航路] 간[間] 여객 및 수·소하물 연대운송규칙[旅客及手·小荷物連帶運送規則]) 중(中) 1932(昭和 7)년 1월 25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2(昭和 7)년 1월 25일

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15조(條) 중(中) 「공무여행(公務旅行)인 것의 증명서(證明書)」를 「국(局) 소정(所定)의 공무운임할인증(公務運賃割引證)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제24조(條) 중(中) 「공용(公用)인 것의 증명서(證明書)」를 「국(局) 소정(所定)의 공무운임할인증(公務運賃割引證)」으로 개정(改正)함.